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소금지 규정 삭제 〉

■ 조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958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3. 관계기관 의견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배숙의원 등 12명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II. 제안이유

현행법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종국판결 이후에도 확정 전에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능함. 소를 취하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짐. 다만 반복적인 소의 제기와 취하를 방지하고, 법원의 판결에 소요되는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종국판결 이후 소를 취하한 원고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재소금지 규정은 과거 일본법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따른 입법례로 현재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소송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음. 세계적으로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취하를 한 원고에 대해 재소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존재하지 않음. 학계에서도 현행법의 재소금지 규정에 대해 다양한 반대의견이 존재함. 즉, 소취하는 소송물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에 대해 당사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고, 법원도 확정 재판 없이 단순히 소송을

종료시켜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다시 제소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비판이 있음. 판례의 ‘재판의 농락 방지’라는 논거는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일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소’를 판단하는 것이 법리상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만, 원고의 재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도록 하고, 원고가 전소의 비용을 상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소제기를 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함.

Ⅲ. 주요내용

가. 원고가 소를 취하할 때 법원은 피고에게 소취하의 법률적 효과에 대해 알려주어야 함(제266조제7항).

나.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려면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하여야 하고, 의무의 이행 없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이 상환을 명하고 불이행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

다.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함(제267조제2항).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본안에 대한 중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다는 규정을 삭제하되(안 제267조제2항 삭제), 중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하도록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상환의무 이행을 명하도록 하고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 신설).

또한 개정안은 법원이 소취하의 효과 즉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등의 효과를 피고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6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6조(소의 취하) ① ~ ⑥ (생략) <신설>	제266조(소의 취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은 제6항 ¹⁾ 에 따른 효과에 대해 피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u>⑧ 중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전소의 비용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⑨ 원고가 제8항에 따른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 대해 기일을 정하여 상환의무의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⑩ 중국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한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제9항의 기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u>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생 략) <u>② 본안에 대한 중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u>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재소금지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66조 및 제2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소가 취하되는 때부터 적용한다.</u>

- 1)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재소금지 규정 삭제(안 제267조제2항 삭제)에 대한 검토

(1) 재소금지 원칙의 의의

재소금지원칙이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임(법 제267조제2항)²⁾.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소를 취하할 수 있지만³⁾,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후에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대법원은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임의의 소취하로 그때까지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같은 소’의 의미에 대하여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더라도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2)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재소금지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의 소취하로 그때까지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와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

또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후 소를 취하한 사람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해외 입법례4)

① 독일

독일에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구술변론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ZPO⁵⁾ 제269조 제1항), 소가 취하되면 소송은 계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며 선고된 판결은 효력을 상실함(ZPO 제269조 제3항 1문). “소가 새로이 제기되면 피고는 비용이

4) 이충상, “재소금지의 폐지 :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攷 제73집, 2021.4., pp. 273-304

5) 독일 민사소송법(Zivilprozessordnung)을 의미함

상환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ZPO 제269조 제6항)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소취하 후의 재소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② 미국

미국 연방민사소송의 경우 원고는 ① 상대방 당사자의 답변이나 사실심리 생략판결의 신청이 송달되기 전에 언제라도 소취하 통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또는 ②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소취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취하(voluntary dismissal)를 할 수 있고, 소취하 통지서나 소취하 합의서에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소취하는 재소금지효(prejudice)가 없으며, 다만 연방이나 주의 어느 법원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에 기하거나 동일한 청구를 포함한 소를 취하하였던 원고가 다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 소취하 통지서가 본안에 관한 사법적(司法的) 판단으로 작용하여 재소가 금지됨{연방민사소송규칙 41(a)(1)}.

그 외에는 법원의 명령과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기한 경우에만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에 달리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한 재소가 금지되지 않음{같은 규칙 41(a)}. 이미 소를 취하하였던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기하거나 동일한 청구를 포함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전(前) 소송의 비용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같은 규칙 41(d)}.

그리고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도 연방민사소송규칙과 같은 제약을 두고 있고, 소취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이 개시되기 전의 상태에 있게 함.

③ 일본

현행 일본 민사소송법은 우리 민사소송법과 동일함. 다만, 원래의 일본 민사소송법은 현행 독일 민사소송법과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재소금지조항이 1926년 민사소송법 개정 때 신설되고 192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취하 후 재소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재소금지 규정은 현재 국민의 시각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소송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 소취하한 원고에 대해 재소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일본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⁶⁾, ‘같은 소’를 판단하는 것이 법리상 쉽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안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됨⁷⁾.

6) 미국의 경우에도 이미 동일한 청구에 기하거나 동일한 청구를 포함한 소를 취하하였던 원고가 다시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재소가 금지됨

다만, 재소금지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은 소취하 후 재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별로 재소이익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재소를 허용하고 있음. 즉 현행법 하에서도 본안에 대한 중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에 대하여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재소를 허용하고 있고 재소금지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⁸⁾.

둘째, 동일한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소 제기가 가능해지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며, 피고에게 과도한 소송부담이 가해질 수 있음.⁹⁾

셋째, 재소금지 규정이 삭제될 경우 소취하의 남용 및 남소의 가능성과 피고의 동의 거부로 인한 소취하 제한의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며, 양쪽 모두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즉 중국판결 선고 후 불리한 판결을 받으면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7) 제안이유 참고

8)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9) 피고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계속 재판 준비를 해야 하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계속 소모해야 함.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 가능한 소송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고¹⁰⁾¹¹⁾ 이로 인해 소취하를 통한 신속한 분쟁 종결이 어렵게 될 수 있음. 결과적으로 법원의 사건 부담이 증가하고 다른 사건의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종국판결 선고 뒤 소를 취하한 사람에 대하여도 재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도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남소, 분쟁의 장기화, 피고의 과도한 소송 부담 가중, 사법자원의 비효율적 운영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소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짐.

제266조(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11)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할 수 있을 것임.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은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확정판결이 원고패소 판결인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구속력 때문에 신소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확정판결이 원고 승소판결인 경우 신소는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함(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90 판결).

나. 피고에 대한 통지 규정 신설(안 제266조제7항)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법원이 피고에게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효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¹²⁾.

이는 피고가 소취하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소취하 후 원고의 재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피고가 모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사전에 명확히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소취하 동의 간주 효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제266조(소의 취하)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원고의 소송비용 상환의무 및 전소 비용 상환 불이행 시 각하
(안 제266조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한 검토

(1) 소송비용 부담 원칙

현행법 제98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¹³⁾

소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에는 현행법 제114조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 소취하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관련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20. 7. 17. 자 2020카합522 결정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¹⁴⁾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으나,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되어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¹³⁾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2)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취하 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 대하여 전소 비용 상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송비용 상환 의무는 재소금지 규정이 삭제되는 경우, 원고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임.

이는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 41조(d)¹⁵⁾에서 원고가 동일한 청구에 대해 이전 소송을 취하한 후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에게 이전 소송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새로 제기된 소송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규정으로 이

14)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 방법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5)(d) Costs of a Previously Dismissed Action. If a plaintiff who previously dismissed an action in any court files an action based on or including the same claim against the same defendant, the court:

(1) may order the plaintiff to pay all or part of the costs of that previous action; and

(2) may stay the proceedings until the plaintiff has complied.

해 됨.

다만, 소취하의 경우 소송비용은 재소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가 청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상환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적거나 충분한 자력이 있는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 남용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재소금지 조항 삭제(안 제267조 제2항)에 대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는 수긍할만한 측면이 있으나, 현행법하에서도 종국판결이 있는 뒤 소를 취하한 경우에 사정변경 등으로 새로운 권리보호 이익이 있으면 재소가 금지되지 않고, 재소금지 조항이 삭제될 경우 소취하의 남용과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어려우며, 재소금지 제한이 없을 경우 한정적인 사법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소취하 동의 효과 통지 규정(안 제266조 제7항)은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법원이 당사자에게 법률적 효과를 통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전소 비용 상환 불이행 시 소 각하(안 제266조

제8항 내지 제10항) 규정은 소송비용 상환의무 이행만으로 소취하 및 재소의 남용을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마련되어 있는 재소금지원칙의 경우 무제한적으로 재소를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당사자의 재판 농단 내지 종국판결 선고 후 그 확정 전까지 법원이 기울인 상당한 노력의 무산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소취하한 원고에 대해 재소를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제재이며 재소를 금지함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과 재소를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보더라도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고 보이며, 후소를 처리하는 재판부가 전소 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소에서 판결에 기울인 법원의 노력이 소취하로 인해 무용화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재소금지원칙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1